

## 부속서 III

###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목록

#### 대한민국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1. 이 부속서의 대한민국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 내지 5목과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3.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의 기존의 조치
    - 1) 제13.2조(내국민 대우)
    - 2) 제13.3조(최혜국 대우)
    - 3)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3.5조(국경간 무역), 또는
    - 5) 제13.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3.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13.2조 · 제13.3조 · 제13.4조 · 제13.5조 또는 제13.8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제13.9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 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13.9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3.9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3.9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13-나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3.9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대한민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국민,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3.2조·제13.3조·제13.4조 또는 제13.5조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1.3조(내국민 대우)·제11.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1.8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부록 III-가는 양 당사국이 제13.2조 또는 제13.4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3.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조치를 기재한다.

8. 제12.2조(내국민 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 상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제13.5조제1항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부록 III-가

#### 제13.4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3.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다음의 조치는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 가.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는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0조와 제11조(법률 제7971호, 2006. 8. 29)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와 제16조(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 나. 대한민국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5-9조(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6-84호, 2006. 11. 30))
- 다.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외국의 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국경간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원화로 지급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및 제7-7조 내지 제7-10조(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6호, 2006. 8. 3))
- 라. 대한민국 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금융통화위원회, 1999. 8. 19),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법률 제8143호, 2006. 12. 3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대통령령 19464호, 2006. 5. 3))
- 마. 순매각 포지션의 합계 또는 순매입 포지션의 합계 중 더 큰 값에 의하여(약식방법) 계산되는 외국환은행의 종합순노출 포지션은 전월말 총 자기자본의 50퍼센트로 제한된다. 국내 은행이 보유한 차액결제 선물환의 매입초과(원화매입초과)포지션은 2004년 1월 14일에 등록된 매입초과포지션의 1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법률 제8050호, 2006. 10. 4)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6호, 2006. 8. 3))
- 바. 증권저축 및 유가증권 신용공여는 신용한도금액과 수익의 운용에 대한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증권저축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예탁을 대가로 증권회사가 보관하는 판매가능한 유가증권을 그 증권회사가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도와 매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증권거래법 제49조 및 제50조(법률 제7762호, 2005. 12. 29),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15

및 제35조의16(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 사.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여액은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법률 제7929호, 2006. 4. 28))
- 아. 대한민국에 설립된 은행, 증권회사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은 관련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은행법 제27조 및 제28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증권거래법 제51조(법률 제7762호, 2005. 12. 29), 그리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 자. 금융기관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은행법 제38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보험업법 제105조(법률 제7971호, 2006. 8. 29))
- 차. 대한민국의 비거주자는 대한민국에서의 실제적인 이용만을 위하여 외화를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7조 내지 제7-10조, 그리고 제7-36조 내지 제7-39조(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6호, 2006. 8. 3))
- 카. 대한민국은 예금 이자율 · 대출 이자율 · 그 밖의 이자율 ·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은행법 제30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금융통화위원회, 2003. 12. 2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5조(법률 제7523호, 2005. 5. 3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대통령령 제19019호, 2005. 8. 31))

다음의 조치는 제13.10조(예외)제1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13.2조(내국민 대우)는 대한민국이 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가. 외국보험사 지점의 영업기금은 자본금으로 간주될 것이며, 본점의 자본금은 그러한 지점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액 또는 대출하려고 하는 대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할 것이다.(보험업법 제9조 제3항(법률 제7971호, 2006. 8. 29))
- 나. 외국보험사의 대한민국의 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총계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75조(법률 제7971호, 2006. 8. 29))

## 두 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sup>1)</sup>
3. 제13.2조(내국민 대우) 및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대한민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대한민국은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13.9조(비합치 조치)제1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13.9조 제1항다호는 제13.4조가호에 관한 비합치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3.4조나호에 관한 비합치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 제 1 절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보험업법 제91조(법률 제7971호, 2006. 8. 29)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유보내용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  
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대한민국은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  
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수와 같이 보험상품의 판매방  
식을 제한하며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  
험상품의 은행판매비율에 대하여 제한함을 밝힌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간 무역(제13.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7100호, 2004. 1. 2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7504호, 2005. 5.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7428호, 2005. 3. 31)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7505호, 2005. 5. 26)  
선원법(법률 제8041호, 2006. 10. 4)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913호, 2006. 3. 24)  
유선 및 도선사업법(법률 제7985호, 2006. 9. 2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279호, 2004. 12. 31)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8016호, 2006. 9. 27)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8014호, 2006. 9. 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7002호, 2003. 12. 11)  
항공운송사업진흥법(법률 제6621호, 2002. 1. 19)  
도로교통법(법률 제7969호, 2006. 7.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8050호, 2006. 10. 4)  
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 제8045호, 2006. 10.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7305호, 2004. 12. 31)  
원자력손해배상법(법률 제7188호, 2004. 3. 11)  
화물유통촉진법(법률 제8014호, 2006. 9. 27)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7918호, 2006. 3. 24)  
낚시어선업법(법률 제7642호, 2005. 7. 29)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7929호, 2006. 4. 28)

전자서명법(법률 제7813호, 2005. 12. 30)

변호사법(법률 제7894호, 2006. 3. 24)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5호, 2005. 3. 31)

#### 유보내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3-가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어떠한 그러한 서비스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제15조 및 제16조의2(법률 제7428호, 2005. 3. 31)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및 제8조의2(법률 제7529호, 2005. 3. 3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유보내용**

1.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sup>2)</sup>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2. 투명성을 목적으로
  - 가.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서 기술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승인기준을 적용한다.
  - 나. 자연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 다.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체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로 증가시킬 수 있다.

2)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제58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은행업인가지침 제17항나호(2004. 7. 23)

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6-87호, 2006. 12. 28)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대한민국에서의 각 지점 설치는 개별 인가를 요구한다.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 제7조 및 제15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유보내용**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대한민국에서 증권 또는 선물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증권거래법 제173조 내지 제178조 및 제194조(법률 제7762호, 2005. 12. 29)

**유보내용** 증권예탁결제원만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자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증권회사 계정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증권거래법 제173조의3 및 제194조(법률 제7762호, 2005. 12. 29)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유보내용** 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국경간 무역(제13.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선물거래법 제51조(법률 제7617호, 2005. 7. 29)

**유보내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거주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역외 선물, 옵션 및 특정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제62조 및 제63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은행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증권거래법 제28조의2(법률 제7762호, 2005. 12. 29)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4(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대한민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대한민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다른 나라  
의 법에 따라 설립된 그 은행 또는 그 증권회사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법률 제8145호, 2006. 12. 30)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법률 제8143호, 2006. 12.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법률 제7929호, 2006. 4. 28)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3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법률 제7883호, 2006. 3. 24)  
외국환거래법 제9조(법률 제8050호, 2006. 10.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5조, 제154조 및 제155조(법률 제7618호, 2005. 7. 29)

**유보내용** 다음 유형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다.

- 가. 신용협동조합
- 나. 상호저축은행
-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 라. 종합금융회사
- 마. 외화 및 원화자금증개회사
- 바. 신용정보회사
- 사. 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 아.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 자. 채권평가회사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법률 제7929호, 2006. 4. 28)

**유보내용** 대한민국에서 일정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7620호, 2005. 7. 29)  
중소기업은행법(법률 제7717호, 2005. 12.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7882호, 2006. 3. 24)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7638호, 2005. 7. 29)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7611호, 2005. 7. 2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가. 다음 금융기관(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 수산업협동조합

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특정조세의 면제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3.8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6조(법률 제7882호, 2006. 3. 24)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법률 제7638호, 2005. 7.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법률 제7611호, 2005. 7. 21)

**유보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주택법 제75조(법률 제8050호, 2006. 10.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건설교통부령 제531호,  
2006. 8. 18)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외국환거래법 제9조(법률 제8050호, 2006. 10. 4)

**유보내용** 대한민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간 중개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된다.

## 제 2 절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간 무역(제13.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3-가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 영역에서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배 기관을 민영화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은 이 기관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증 또는 한시적인 추가 보증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428호, 2005. 3. 31)

증권거래법(법률 제7762호, 2005. 12. 29)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가. 공모의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나. 공모 이후, 그 거래소 또는 그 결제원이 미합중국 금융기관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한다.